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살위험에 처한 주민의 권리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제5조)
- 나. 자살예방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7조)
- 라.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마.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 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비밀보장 의무(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구미시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
8.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구미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구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구미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5.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각종 계획 및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 및 사업으로 본다.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

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 생략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3.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2011.8.4>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생략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⑧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8.3.21>

⑨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9.3.18]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3.15>

1. ~ 2. 생략
3.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
-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8]